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1. 2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8. 11. 19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18. 11. 20.
다. 상정일자 :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18. 11. 27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생활보장과장 조만호

가. 제안이유

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.12.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제2조의2(존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3. 검토보고 (이주현 전문위원)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 여부

○ 이건 개정조례안 "의료급여 특별회계"는 "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"라는 의료급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.

○ 이에따라, 우리 마포구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위해 이건 조례안을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.12.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조례 개정 절차의 적정성 여부

○ 의료급여법에 의거 제정된 이건 조례는 2007년 제정되어 여러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으나 그동안 존속기한 규정이 없었습니다.

○ 한편, '지방재정법' 2014.5.28일 부칙에 의하면 "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.12.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"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건 조례안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18.12.31일로 종료되게 됩니다.

○ '지방재정법' 제9조(회계의 구분) 제3항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에따라, 2018.11.19일 마포구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심의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필요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다. **검토 종합의견**

○ 위와 같이 조례개정의 필요성, 조례개정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위해 적립형 기금이 아닌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 집행부 소관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의 존속기한이 종료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·진행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